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35745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357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단2321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메르센

변론종결 2017. 4. 6.

판결 선고 2017. 4. 2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단232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박영욱

판사이현주

별지